



제 1041 호

2012년 5월 4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2-	663호	사업자등록 폐업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 소 예정 공고	2
○ 공고 제2012-	6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공고	3
○ 공고 제2012-	676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13
○ 공고 제2012-	681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고	15
○ 공고 제2012-	691호	2012년 간석보건지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6
○ 공고 제2012-	6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공고	18
○ 공고 제2012-	700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25
○ 공고 제2012-	7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28
○ 공고 제2012-	704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장폐쇄) 공시송달 공고	35

고 시

○ 고시 제2012-	51호	도로명주소 고시	36
○ 고시 제2012-	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남촌동 소로2-1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40
○ 고시 제2012-	53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42
○ 고시 제2012-	54호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 고시	48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66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2. 5. 11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4. 공 고 기 간 : 2012. 4. 30 ~ 2012. 5. 10(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구월1-290	지(G)	유병식	성말로13번길36-14,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2011.11.18	2012.5.11

6. 고 지 사 항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2012. 5. 10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 (032) 453-2622

2012. 4.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67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4.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에 의거 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 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을 규정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본 규칙의 목적 재정립 (안 제1조)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 위임(현행)

➡ 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의 재위임(개정)

나.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안 제1조)

- 수임기관에 사업소(남동문화예술회관) 추가

다. 현행 규칙의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 상급기관(인천시) 조례 체계에 따라 재위임 사무 정비

라.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3)

- 장수수당 관련 사무의 처리(시장 ⇒ 구청장 ⇒ 동장에게 재위임)

4.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4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으로 규정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본 규칙의 목적 재정립 (안 제1조)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 위임(현행)
 - ➡ 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의 재위임(개정)
-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 (안 제1조)
 - 수임 기관에 사업소(남동문화예술회관) 추가
- 현행 규칙의 미비점 보완(안 별표 2)
 - 상급기관(인천시) 조례 체계에 따라 재위임 사무 정비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재위임 사무 신설(안 별표 3)
 - 장수수당 관련 사무의 처리(동장에게 재위임)

☐ 본 문 :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 별첨 ”☐ 참고자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위임사항)”을 “(재위임사항)”으로 하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으로 하고,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를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 생 과	1. 의약품판매에 관한 사항 가. 의약품도매상 허가 나.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다. 도매상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약사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제35조제3항 같은 법 제84조제1항	
	2.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다. 시설의 사용제한 금지 및 개수명령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처분 마. 보고와 업무감사 바.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조 「의료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63조의2	
	3. 의약품판매업(한약중상, 약중상, 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라. 의약품판매업 허가증 갱신	「약사법 시행규칙」 제52조 「약사법」 제35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4.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 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마약류 도매업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제5항 같은 법 제10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사. 사고마약류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승인	같은 법 제26조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같은 법 제40조	
	거.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더.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머. 청문	같은 법 제45조	
	버. 과징금처분	같은 법 제46조	
	5.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진료 등 보호 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22조	
	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사업 지도 나. 모자보건, 가족계획요원 교육	「모자보건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7. 의료장비관리	「물품관리법」 제35조	
	8. 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산후조리업 신고 및 사항 변경 나.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등 라. 시정명령 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바.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사. 과징금 아. 청문	「모자보건법」 제15조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도 시 공원과	1.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시공원 관리 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라. 녹지관리 마. 녹지의 점용허가 바. 입장료·사용료 징수 사. 점용료 징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2. 가로수 관리 가. 가로수 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별표 3]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노 인 장애인과	1. 장수수당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장수수당지급신청서 접수, 지급 대상자 관리·홍보 및 기타 제반업무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남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위임사항) <u>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u>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조(목적) ----- 「<u>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u>」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수임 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제2조(재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 받은 사무 중-----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 676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근절을 위한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법률』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설치목적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설치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계획

- 사 업 명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
- 설치개소 : 1개소
-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1432번지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12. 5. 1 ~ 2012. 5. 23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기준)
- 의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해당사유, 주소, 성명(기관·단체장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연락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청소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전화 : 032-453-2554, FAX : 032-453-2559

5.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청소과(청소행정팀)로 문의
(☎032-453-2554)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구보 및 구청 및 구월1동 게시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681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5. 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목욕장	로데오21 사우나	황문효 김범수 박원선 하용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3-2 B101호,102호	시설물 무단열실	영업소폐쇄

3. 처분일 : 2012. 5. 2 (수)
4. 공고기간 : 2012. 5. 2 ~ 2012. 5. 16(15일)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 6.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12-691호

간석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보건의료 수요에 능동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보건의료서비스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12. 04.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응시자격	채용기간	비고
간 호 사	2명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2012.06.11-2012.12.31	
물리치료사	1명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2012.06.11-2012.12.31	
영 양 사	1명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2012.06.11-2012.12.31	
운동처방사	1명	생활체육지도사 3급 이상 소지자	2012.06.11-2012.12.31	

2.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되지 아니한 자로서
- 해당분야 면허 및 자격 소지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3. 보 수

- 근무일 × 60,000원
- 주휴수당, 월차수당, 4대보험

4. 채용절차

- 공고 및 서류 접수기간 : 2012. 05. 09 (수) ~ 2012. 05. 15 (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면접일시 : 2012. 05. 22 (화)
- 면접장소 : 남동구 보건소 회의실(4층)
- 최종합격자 통보 : 2012. 05. 23 (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5.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통
- 해당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1통 (해당자에 한해 서류제출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 등·초본 1통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2부
-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6. 업무내용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비고
간 호 사	1명	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 임신부관리업무 보조	
	1명	금연클리닉에 내소하는 흡연자 금연상담,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만성질환자관리	
물리치료사	1명	물리치료 보조, 장애인 기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영 양 사	1명	건강생활실천 사업 보조	
운동처방사	1명	건강생활실천 사업 보조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 보건소 간석보건지소 (☎ 453-56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69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복지관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노인복지관 평가에 대비하고 위탁 법인의 운영 능력과 책임감을 증대시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목적 추가(안 제1조)
- 위탁기간 조정 : “2년 ⇒ 3년”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 ☎453-2250, FAX 453-58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와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노인복지관 평가에 대비 위탁 법인의 운영 능력과 책임감을 증대시켜 노인복지관의 역할을 강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위탁기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를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과 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u>노인의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편의</u>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노인의 교양·취미 생활 및 사회참여활동과 건강증진·질병예방과 재가복지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u>----- ----- -----.
제5조(위탁관리) ①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기간은 <u>2년</u>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 ①----- ----- ----- <u>3년</u> -----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주민생활국 노인장애인과장 김 춘 숙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2012.05.02~05.21 ○ 내 용 - 의견수렴		○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2012.05.02~05.21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 미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 의견수렴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 · 과 · 소 · 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700호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196호(2004.11.15.)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44(2011.10.04)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당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람하오니,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0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년 5월 04일 ~ 2012년 5월 21일
2.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가. 남동구청 건축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633 ☎ 032-453-2792)
3. 공람내용 : 사업시행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 가. 사업명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2) 면 적 : 24,356.2m²

다.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일원)

2) 주 소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범양아파트 상가 5호(☎ 032-562-3744)

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바.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7,279.519m²

- 지하 2층 ~ 지상 27층 / 7개동 총 661세대

(임대 30세대 포함 : 인수자[토지주택공사])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 정비기반시설 : 1,271.50m²

- 도로 : 1,087.40m² / 노외주차장 : 184.10m²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공람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7. 기타사항 : 상기 공고문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건축과(☎ 032-453-2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민 의 견 제 출 서

① 정비사업 명칭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②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6번지		
③ 의견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시행에 대한 의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2 년 05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 하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70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05월 04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남동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평일 및 주말근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도서관 이용민원 집중시기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33조(실비보상) 조항을 신설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에서 봉사하

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 기존의 제33조를 제34조로, 제34조를 제35조로 각각 변경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문화체육과/ ☎ 453-5940, FAX 471-5812)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개정이유

- 소래도서관 및 서창도서관과 간석3동, 만수2동을 비롯한 구립 공공도서관의 평일 및 주말근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도서관 이용민원 집중시기에 원활한 도서관 운영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

□ 주요내용

- 제33조(실비보상) 조항을 신설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에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 기존의 제33조를 제34조로, 제34조를 제35조로 각각 조항을 변경 개정함.

□ 본 문 : 별 첨

□ 참고자료 :

남동구 공공도서관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 2011.07.29 조례 제1059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도서관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공도서관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실비보상)구청장은 구립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u>제33조(실비보상)구청장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제33조</u>	<u>제34조</u>
<u>제34조</u>	<u>제35조</u>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연평균 5천만원 미만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비용추계현황 (단위:천원)

1차년도 (2012년)	2차년도 (2013년)	3차년도 (2014년)	4차년도 (2015년)	5차년도 (2016년)
17,920	40,320	47,040	47,040	47,040

※ 비용추계대상 구립도서관 현황

소래도서관, 서창도서관, 간석3동어린이도서관,

만수2동어린이도서관 (2012. 10월 개관 예정)

간석2동어린이도서관 (2013년 동청사 신.개축시 설립 개관 예정)

작성자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실·단·과·소·동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704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공고)을 실시하였으나,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2. 5. 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처분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처분대상

업종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목욕장	로데오21 사우나	황문호 김범수 박원선 하용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3-2 B101호,102호	시설물 무단열실	영업소폐쇄

3. 처분일 : 2012. 5. 2 (수)
4. 공고기간 : 2012. 5. 2 ~ 2012. 5. 16(15일)
5.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
- 6.유의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재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2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5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5.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1외 5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25-14외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6건)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별 도 열 램(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5.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1번길	11-21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2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941번길 11-2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2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0-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9-7	20091116	소래역로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동로 9-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7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0-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동로	9-9	20091116	소래역로 동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동로 9-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9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4	20091116	쇠가 많이 난 곳 이라는 옛 지역 유래를 인용하여 제명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판로 14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4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8	20091116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미래로 18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8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7-6,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25-15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5.04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4번길 25-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5-15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변경 전 종전지번			변경 후 종전지번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8,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8,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2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25-14	2012.05.04	건물번호 중복에 따른 도로명주소 직권 변경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8,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28-2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4번길	25-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좌동		2012.05.04	종전지번 직권 변경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7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7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148-21	인천광역시 남동구	좌동		2012.05.04	종전지번 직권 변경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9-2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259-2, 25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음실로	76-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좌동		2012.05.04	종전지번 직권 변경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남촌동 소로2-17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 남촌동 소로2-17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5. 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남촌로 75번길 20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남촌동 소로2-17호선)
 - 명 칭 : 남촌동 261-2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8.0m, L=29.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건설과)
 - 주 소 : 우)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12.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1	남동구 남촌동	261-21	대	12	12	노정규	대전 서구 문정로 132번길 43, 402호(탄방동, 태선빌라)	근로복지 공단	인천 남동 구월동 1127	근저당권자
								인천시청 (세정과)	인천 남동 구월동 1138	근저당권자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인천지사)	가압류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도화1동 377-1	압류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인천서부지사)	압류
								남동구청	인천 남동 소래로 633	압류
2	남동구 남촌동	261-24	대	55	55	류금성	인천 서구 원적로 105번길 15-2 (가좌동)	이광근	서울 강서구 화곡로 68길 102, 1024호(등촌동)	근저당권자
								강병주	대전 중구 계백로 1603번길 50-7, 405호(주안빌원룸)	근저당권자
								남동구청	인천 남동 소래로 633	압류
								한국주택 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인천지사)	가압류
소계				67	67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53호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12. 5. 14.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 첨 부 ”

2012. 5.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통·반 구역 조정 내역

[장수서창동, 논현1동]

 통 · 반 구역 조정현황

구 분	조정전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남동구	612	3,493	6	39	618	3,532	
장수서창동	25	123	5	35	30	158	
논현1동	36	227	1	4	37	231	

 통 · 반 구역 조정사유 및 내역

 장수서창동 [5개통 증가, 35개반 증가]

조 정 전			조 정 후			조 정 내 용	조정결과
통	반	세대수	통	반	세대수		
25	123		30	158			5개통 ↑ 35개반 ↑
			26	7	474	통 · 반 신설	서창(2)보금자리
			27	7	464	통 · 반 신설	주택내 7,11블럭
			28	7	391	통 · 반 신설	입주
			29	8	412	통 · 반 신설	
			30	6	393	통 · 반 신설	

 논현1동 [1통 증가, 4개반 증가]

기존통명	조정사유 및 내역	조정결과
35통	○ 세대수 과대 및 다가구 신규입주에 따른 통 분할 - 35통 5개반 (기존통 1개반 축소) - 37통 5개반 (1개통 5개반 신설)	1개통 ↑ 4개반 ↑

■ 통 · 반 조정 세부내역

● 장수서창동 통·반구역 조정 세부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6	소 계			26	소 계		474	신규 입주 통반 신설
	1	신 설			1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1동 1~2호, 1102동1~4호, 1104동 1~2호	72	
	2	신 설			2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3동 1~4호	80	
	3	신 설			3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5동 1~4호	52	
	4	신 설			4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6동 1~4호	76	
	5	신 설			5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8동 1~4호	76	
	6	신 설			6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6동 1~4호, 1117동1~4호	74	
	7	신 설			7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5동 1~4호	44	
27	소 계			27	소 계		464	신규 입주 통반 신설
	1	신 설			1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7동 1~4호	78	
	2	신 설			2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09동 1~4호	78	
	3	신 설			3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0동 1~4호	80	
	4	신 설			4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1동 1~4호	64	
	5	신 설			5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2동 1~4호	48	
	6	신 설			6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3동 1~4호	58	
	7	신 설			7	서창동 11블럭 서창2 휴먼시아 1114동 1~4호	58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28	소 계			28	소 계		391	신규 입주 통반 신설
	1	신 설			1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1동 1~3호	54	
	2	신 설			2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2동 1~3호	49	
	3	신 설			3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22동 1~3호	48	
	4	신 설			4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6동 1~4호	54	
	5	신 설			5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21동 1~4호	70	
	6	신 설			6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7동 1~4호	56	
	7	신 설			7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20동 1~4호	60	
29	소 계			29	소 계		412	신규 입주 통반 신설
	1	신 설			1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3동 1~4호	40	
	2	신 설			2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4동 1~4호, 705동 1~2호	62	
	3	신 설			3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5동 1~4호	46	
	4	신 설			4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6동 1~4호	68	
	5	신 설			5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4동 1~4호	54	
	6	신 설			6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7동 1~4호	52	
	7	신 설			7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3동 1~3호	42	
	8	신 설			8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8동 1~4호	44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조정내역)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통	반	관 할 구 역	세대수	
30	소 계			30	소 계		393	신규 입주 통반 신설
	1	신 설			1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09동 1~4호	56	
	2	신 설			2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0동 1~4호	76	
	3	신 설			3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2동 1~4호	72	
	4	신 설			4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1동 1~4호	76	
	5	신 설			5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9동 1~4호	72	
	6	신 설			6	서창동 7블럭 서창2 휴먼시아 718동 1~3호	41	

● 논현1동 통·반구역 조정 세부내역

현행				조정후				비고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통	반	관할구역	세대수	
35	1	논현동 591-1~19	(152)	37	1	논현동 591-4~10, 592-1~5	71	통반 신설
	2	논현동 594-1~15, 591-20~35	(221)		2	논현동 591-11~19	63	
					3	논현동 591-1~3, 591-20~24, 591-35	80	
					4	논현동 594-1~15	89	
	3	논현동 592-1~20	(120)		5	논현동 591-25~34	69	
	4	논현동 592-21~36	(140)	1	논현동 592-6~7, 592-13~20	77		
	5	논현동 593-1~6, 593-11~18	(89)	2	논현동 592-8~12, 592-21~28	89		
				3	논현동 592-29~36	95		
	6	논현동 593-19~26, 594-17~20	(99)	35	4	논현동 593-1~2, 593-11~18, 594-16~17	86	
					5	논현동 593-3~10, 593-19~26, 594-18~20	102	

통·반 구역 조정 현황

▷ 승인 일자 : 2012.05.14

구분 동명	현행		증감		조정후		비 고
	통	반	통	반	통	반	
계	612	3,493	6	39	618	3,532	
구월1동	36	197	0	0	36	197	
구월2동	41	222	0	0	41	222	
구월3동	25	137	0	0	25	137	
구월4동	30	169	0	0	30	169	
간석1동	38	214	0	0	38	214	
간석2동	20	139	0	0	20	139	
간석3동	49	257	0	0	49	257	
간석4동	39	213	0	0	39	213	
만수1동	35	171	0	0	35	171	
만수2동	33	177	0	0	33	177	
만수3동	23	132	0	0	23	132	
만수4동	32	198	0	0	32	198	
만수5동	28	184	0	0	28	184	
만수6동	33	185	0	0	33	185	
장수서창동	25	123	5	35	30	158	서창동지리 주택내 7,11블럭 0파트 입주
남촌도림동	34	193	0	0	34	193	
논현1동	36	227	1	4	37	231	논현2택 지내 산별 주 택단지 입주
논현2동	29	194	0	0	29	194	
논현고잔동	26	161	0	0	26	161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2-54호

2012년도 예 산 고 시

제19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2. 4. 27)에서 의결, 확정된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2012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425,916,024	406,746,967	19,169,057	4.7	
일 반 회 계		389,455,208	370,286,151	19,169,057	5.2	
특 별 회 계		36,460,816	36,460,816	0	0.0	
	의료급여기금	635,187	635,187	0	0.0	
	폐기물처리 시 설 설 치	20,219,361	20,219,361	0	0.0	
	지하수 관리	105,008	105,008	0	0.0	
	장수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607,270	607,270	0	0.0	
	서창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284,182	2,284,182	0	0.0	
	도림지구토지 구획정리사업	2,831,276	2,831,276	0	0.0	
기 반 시 설		461,032	461,032	0	0.0	
주 차 장		9,317,500	9,317,500	0	0.0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89,455,208	100	370,286,151	100	5.2
세 입	지방세수입	94,130,207	24.2	94,130,207	25.4	0.0
	세 외 수 입	61,176,391	15.7	57,054,180	15.4	7.2
	경상적세외수입	25,210,512	6.5	25,208,812	6.8	0.0
	임시적세외수입	35,965,879	9.2	31,845,368	8.6	12.9
	지방교부세	6,365,800	1.6	0	0.0	0.0
	조정교부금	40,862,448	10.5	40,862,448	11.0	0.0
	보 조 금	186,920,362	48.0	178,239,316	48.1	4.9
	국고보조금등	117,032,409	30.1	112,152,216	30.3	4.4
	시도비보조금등	69,887,953	17.9	66,087,100	17.8	5.8
	지 방 채	0	0.0	0	0.0	0.0
	국내차입금	0	0.0	0	0.0	0.0
세 출	인 건 비	50,918,568	13.1	48,277,028	13.0	5.5
	물 건 비	22,818,436	5.9	22,696,218	6.1	0.5
	경 상 이 전	234,465,362	60.2	227,182,971	61.4	3.2
	자 본 지 출	68,196,382	17.5	59,216,194	16.0	15.2
	융자및출자	0	0.0	0	0.0	0.0
	보 전 재 원	250,000	0.1	250,000	0.1	0.0
	내 부 거 래	3,323,070	0.9	3,323,070	0.9	0.0
	예비비및기타	9,483,390	2.4	9,340,670	2.5	1.5

나.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389,455,208	100	370,286,151	100	19,169,057	5.2
기 능 별	일반공공행정	32,549,999	8.4	32,112,709	8.7	437,290	1.4
	공공질서및안전	1,381,031	0.4	1,351,510	0.4	29,521	2.2
	교 육	10,954,892	2.8	10,631,923	2.9	322,969	3.0
	문화및관광	11,057,647	2.8	9,997,586	2.7	1,060,061	10.6
	환경보호	15,504,858	4.0	15,427,666	4.2	77,192	0.5
	사회복지	192,688,142	49.5	184,956,852	49.9	7,731,290	4.2
	보 건	10,670,445	2.7	10,315,564	2.8	354,881	3.4
	농림해양수산	3,721,878	1.0	3,699,420	1.0	22,458	0.6
	산업.중소기업	6,177,686	1.6	6,159,530	1.7	18,156	0.3
	수송및교통	18,857,465	4.8	16,038,179	4.3	2,819,286	17.6
	국토및지역개발	18,663,627	4.8	14,389,029	3.9	4,274,598	29.7
	예 비 비	6,477,748	1.7	6,340,630	1.7	137,118	2.2
	기 타	60,749,790	15.6	58,865,553	15.9	1,884,237	3.2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36,460,816	100	36,460,816	100	0	0.0
세입	지방세수입	0	0.0	0	0.0	0	0.0
	세 외 수 입	35,889,226	98.4	35,889,226	98.4	0	0.0
	경상적세외수입	3,397,567	9.3	3,397,567	9.3	0	0.0
	임시적세외수입	32,491,659	89.1	32,491,659	89.1	0	0.0
	지방교부세	0	0.0	0	0.0	0	0.0
	조정교부금	0	0.0	0	0.0	0	0.0
	보 조 금	571,590	1.6	571,590	1.6	0	0.0
	국고보조금등	447,496	1.2	447,496	1.2	0	0.0
	시도비보조금등	124,094	0.3	124,094	0.3	0	0.0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36,460,816	100	36,460,816	100	0	0.0
성 질 별	인 건 비	896,107	2.5	893,458	2.5	2,649	0.3
	물 건 비	1,005,718	2.8	999,188	2.7	6,530	0.7
	경상이전	557,711	1.5	556,948	1.5	763	0.1
	자본지출	19,231,250	52.7	18,848,609	51.7	382,641	2.0
	융자및출자	0	0.0	0	0.0	0	0.0
	보전재원	0	0.0	0	0.0	0	0.0
	내부거래	134,779	0.4	134,779	0.4	0	0.0
	예비비및기타	14,635,251	40.1	15,027,834	41.2	△392,583	△2.6
기 능 별	환경보호	20,219,361	55.5	20,219,361	55.5	0	0.0
	사회복지	605,300	1.7	605,300	1.7	0	0.0
	수송및교통	8,950,659	24.5	8,954,071	24.6	△3,412	△0.0
	국토및지역개발	6,288,768	17.2	6,288,768	17.2	0	0.0
	기 타	396,728	1.1	393,316	1.1	3,412	0.9